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2항 관련)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b>1.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b>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제4호 바목에 따른 기기와 동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	가. 산업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나. 과학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다. 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라. 가정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b>2.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b> : 전파통신이나 방송 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 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	가. 자동차 기기류	○				
	나.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다.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 (자동차 전장품)	○				
<b>3.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류</b> : 9kHz 부터 400GHz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				
	나. 영상모니터	○				
	다.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				
※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라. 비디오카메라	○				
	마. 튜너	○				
	바. 편집기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사. 디스크플레이어	○				
	아. 라디오수신기	○				
	자. 앰프	○				
	2) 앰프내장형스피커					
	차. 리시버	○				
	카. 음성기록계	○				
	타. 음성플레이어	○				
	파. 오디오시스템	○				
	하. 전자악기	○				
	거. 위성방송수신기	○				
	너. 비디오게임기구	○				
	더. 비디오폰	○				
	러. TV영상프로젝터	○				
	머. 음질조절기	○				
	2) 이퀄라이저					
	버. 오디오프로세서	○				
	서. 신호변환장치(AD/DA)	○				
	어.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저. 컴프레서 게이트	○				
	쳐. 전자시계	○				
	커. CCTV 카메라	○				
	터. 영상전송기	○				
	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허. 영상기록계	○				
	고. A/V 신호수신기	○				
	노. 영상프로세서	○				
	도.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로. 턴테이블	○				
	모.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 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가. 전기청소기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2.5kW 이하인 것에 한함)	1)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			
		2) 전기바닥청소기				
3) 전기표면세척기						
4) 스팀 청소기						
나. 전기다리미 및	1) 전기건조다리미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 보호						
						SAR	전자파 강도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전기프레스기	2) 스팀다리미	○									
		3) 바지 프레스기										
		4) 주름펴기										
		5) 다림질 프레스										
	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	1) 전기식기세척기						○				
		2) 전기식기건조기										
	라. 주방용전열기구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I) 방식 제품에만 적용)	1) 전기레인지						○				○
		2) 전기오븐기기										
		3) 전기거치식그릴										
		4) 전기호브										
		5) 전기곤로										
		6) 전기가열기										
		7) 전기토스터										
		8) 전기프라이팬										
		9) 전기휴대형그릴										
		10) 전기고기구이기										
		11) 와플기기										
		12) 핫플레이트										
	마.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1) 전기세탁기 (의류, 옷감 세탁 용으로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						○				
2) 전기탈수기 (드럼속도 50m/s 이하인 것)												
바. 모발관리기	1) 모발건조기	○										
	2) 전기머리인두											
	3) 모발말개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1) 전기보온기	○										
	2) 전기주온기											
	3) 전기온장고											
아. 주방용전동기기	1) 주서	○										
	2) 주서믹서기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 보호	
						SAR	전자파 강도
		3) 후드믹서 4) 전기녹즙기 5) 크림거품기 6) 계란반죽기 7) 혼합기 8) 버터제조기 9) 압즙기 10) 슬라이스기 11) 전기칼갈이 12) 전기깡통따개 13) 전기칼 14) 커피분쇄기 15) 빙삭기 16) 전기고기갈개 17) 전기국수제조기 18) 전기육절기 19) 전기골절기 20)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 이 하인 것에 한함)					
	자. 전기액체가열기기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방식 제품에만 적용)	1) 전기밥솥 2) 전기보온밥솥 3) 전기주전자 4) 전기냄비 5) 전기물끓이기 6) 전기약탕기 7) 커피메이커 8) 전기스팀쿠커 9) 달걀조리기 10) 우유가열기 11) 젓병가열기	○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12) 요구르트제조기						
	13)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 기기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자파강도는 직류 전원 사용제품은 제외)	1) 전기방석	○				○	
	2) 전기요						
	3) 전기매트						
	4) 전기카펫						
	5) 전기장판						
	6) 전기침대						
카. 전기찜질기	○						
타. 발 보온기	1) 발보온기	○					
	2) 전기손난로						
파.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 (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					
	2) 순간온수기						
하. 전기냉장·냉 동 기기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 이 하인 것)	1) 전기냉장· 냉동기기	○					
	2) 제빙기						
	3) 아이스크림프라이어						
	4) 전기냉수기						
거. 전자레인지 (300MHz~30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 하는 것을 말함)	○						
너. 가정용 전동채봉기	○						
더. 전기충전기 (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	○						
러. 전기건조기	1) 회전형 전기건조기	○					
	2) 손건조기						
	3) 전기건조기						
며. 전열기구	1) 전기스토브	○					
	2) 전열보드						
	3) 전기라디에이터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 보호	
					SAR	전자파 강도
	4) 전기온풍기					
	5) 축열식전기난방기					
	버. 전기맛사지기	○				
	서. 냉방기 및 제습기 (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내장된것)	1) 냉방기	○			
	2) 제습기					
어. 유체펌프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 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 펌프 및 기계기구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은 제외)	1) 유체펌프	○				
2) 전기온수펌프						
	저. <삭 제>					
	처. 사우나기기	1) 전기스팀 사우나기기	○			
		2) 전기사우나기기				
		3)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4)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커. <삭 제>					
	터. <삭 제>					
퍼. <삭 제>						
허. 전기욕조	1) 소용돌이 욕조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욕조기포 발생기 포함)	○				
	2) 반신(전신)욕조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3) 발육조					
	고. 공기청정기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	○				
	노. 자동판매기	○				
	도. 팬, 레인지후드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 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	○				
	1) 선풍기					
	2) 송풍기					
	3) 환풍기					
	4) 레인지후드					
	5) 전기냉풍기					
	로. 화장실용 전기기기	○				
	1)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2) 전기변좌					
	3) 오물흡입기					
	모. 가습기	○				
	보. <삭 제>					
	소. <삭 제>					
	오.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중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제조·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조. <삭 제>					
	초. <삭 제>					
	코. <삭 제>					
	토. <삭 제>					
	포. <삭 제>					
	호. 전기용해기	○				
	1) 왁스용해기					
	2) 초코렛용해기					
	3) 파라핀용해기					
	구. <삭 제>					
	누. 이미용기	○				
	1) 전기머리손질기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2) 두피모발기					
		3) 샴푸기기					
		4) 모발가습기					
		5) 손톱정리기					
		6) 전기면도기					
		7) 전기이발기					
		8) 안면사우나기					
	두. <삭 제>						
	루. <삭 제>						
	무.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1)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2)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부.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1) 전기이발용의자	○				
		2) 전동침대					
		3) 전기온열의자					
	수. <삭 제>						
	우. 전기온수매트	1) 전기보일러	○				
		2) 전기온수매트 및 전기온수침대					
	주. 구강청결기	1) 전동칫솔	○				
		2) 구강세척기					
	추. <삭 제>						
	쿠. <삭 제>						
	투. 해충퇴치기	1) 해충퇴치기	○				
		2) 전기포충기					
	푸. 전기집진기		○				
	후. 착유기		○				
	그. 서비스기기	1) 전기광택기	○				
		2) 수하물보관기					
		3) 지폐교환기					
		4) 동전교환기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 보호	
					SAR	전자파 강도
느. 전기에어커튼		○				
드.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르. 폐열 회수 환기장치		○				
므. 게임기구	1) 레이저사격기기	○				
	2) 운전시물레이션 게임기구					
	3) 인형뽑기					
	4) 다트판					
	5) 농구게임기					
	6) 기타 게임기기					
브. 전동형 롤스크린		○				
스. 전기훈증기	1) 전기훈증살충기	○				
	2) 전기방향확산기					
으. <삭 제>						
즈. 보플제거기		○				
츠. 산소이온발생기		○				
크. 전기정수기	1) 전기정수기	○				
	2) 전기이온수기					
트. 초음파세척기	1) 초음파세척기	○				
	2) 과일야채세척기					
프. <삭 제>						
호. <삭 제>						
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				
니. 전동공구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함)	1) 전기드릴	○				
	2) 전기드라이버					
	3) 전기그라인다					
	4) 폴리셔					
	5) 전기샌더					
	6) 전기원형톱					
	7) 전기햄머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 보호		
						SAR	전자파 강도	
		8) 전기금속가위						
		9) 전기 테이퍼						
		10) 전기왕복톱						
		11) 전기진동기						
		12) 전기체인톱						
		13) 전기대패						
		14) 전기잔디깎기						
		15) 전기못총						
		16)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17)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다.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1) 전동자전거	○					
		2) 전동보드						
		3) 전동휠체어						
		4) 전동스쿠터						
		5)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5.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 9 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 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가. 일반 조명기구	1) 형광등기구	○				
			2) PLS조명기구					
3)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4) LED등기구								
5) 할로겐등기구 (150W이하의 것)								
6) 고압방전등기구 (150W이하의 것)								
7) 투광조명기구 (150W이하의 것)								
나.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1)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 보호	
						SAR	전자파 강도
		(정격입력이 1kW 이하의 것)					
		2)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kW 이하의 것)					
		3) 네온변압기					
		4)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 전원공급 장치 포함)					
다. 안정기내장형 램프 (LED용 포함)		○					
	라. 기타 조명기구	1) 크라이스 추리용 조명기구	○				
		2) 충전식휴대전등					
		3) LED 모듈 (램프)					
6. 정보·사무 기기류 :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기기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기기	가. 컴퓨터류		○				
	나. 컴퓨터 주변기기류	1) 입력장치류 (스캐너 키보드 등)	○				
		2) 출력장치류 (모니터, 복사기, 팩터프린터 등)					
		3) 외장형 저장장치류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4) 콘트롤러류					
		5)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다.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1) 보드류	○				
		2) 저장장치류					
		3) 전원공급기 및 직류전원장치 <단서 삭제>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4) 콘트롤러류	○				
		5)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라. 사무기기류					
	1) 무정전 전원장치 (정격용량이 10kVA 이하 인 것)						
	2) 코팅기						
	3) 지폐계수기						
	4) 전자저울						
	5) 금전등록기						
	6) 여학실습기						
	7) 문서세단기						
	8) 천공기						
	9) 채단기						
	10) 제본기						
	11) 전자철판 및 보드						
	12) 동전계수기						
	13) 전동타자기						
	14) 전기소자기						
15) 교통카드충전기							
16) 번호표발행기							
	마. 기타 정보·사무 기기류	○					
7. 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기			○				
8. 전선로에 주파수가 9kHz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			○				
9.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14. 단말기기류	가. 전화기(헤드셋 전화기 포함)	○		○		
	나. 다기능 전화기 (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 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		○		
	다.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키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 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 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		○		
	라. 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		
	마. 영상전화기	○		○		
	바.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도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		○		
	사.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		
	아.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카드식 포함)	○		○		
	자.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카드식 포함)	○		○		
	차. 팩시밀리 모뎀(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		○		
	카. 근거리데이터채널모뎀(원격통신용, LADC)	○		○		
	타.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		
	파.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		○		
	하.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 보호	
					SAR	전자파 강도
	거.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		○		
	너. 코텍	○		○		
	더. 다기능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 방식 기기)	○		○		
	러.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기기	○		○		
	머. 원격제어기기	○	○	○		
	버.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		○		
	서. 회선장애 감시기기	○		○		
	어. 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모뎀 등)	○		○		
	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한 인터넷전화기, 라우터 등)	○		○		
	쳐.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케이블모뎀 등)	○		○		
	커.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		○		
15. 승강기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검사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가.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나.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다.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및 구성품류					
	라.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16. 소방기기류	1) 누전경보기(수신부)	○				
	2) 가스누설경보기					
	3) 수신기					
	4) 중계기					
	5) 감지기					
	6) 주거용주방 자동소화장치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7)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8) 가스·분말식 자동소화장치					
	9)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11)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12) 자동차압·과압조절형 탬퍼					
	13) 자동폐쇄장치					
	14) 캐비닛형간이스프링쿨러설비					
	15) 플랩댐퍼					
	16) 유도등					
	17) 비상조명등					
	18) 기타 소방기기류					
17.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착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은 제외)	○				
18.	전기자전거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그 밖에 이동수단용전동기기는 제4호 다목으로 분류)	○				
19.	그밖에 제1호부터 제15호에 준하는 기기류	○				
<p><b>※ 비 고</b></p> <p>1. 제7호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p> <p>나.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p> <p>다. USB 또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p> <p>라.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p> <p>마. 카메라 렌즈</p> <p>바.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p> <p>사.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p> <p>2. 제4호 또는 제7호의 기자재 중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3. 제4호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4. 제5호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